

2022년 노동건강정책포럼 2차 정기토론회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일시: 2022년 4월 19일 (화) 오후 19시

장소: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층 울림홀

주최: 노동건강정책포럼

- 노동건강정책포럼 2022년 2차 정기토론회 -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일시: 2022.04.19(화) 19:00-21:30

장소: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올림홀/ 비대면 병행

zoom 링크: [bit.ly/정보공개와노동건강정책](https://bit.ly/정보공개와노동건강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bit.ly/정보공개소개글](https://bit.ly/정보공개소개글)

♣ 사회: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발표

1. 정보공개운동의 관점에서 본 산업안전보건관련 정보공개  
의 현황과 과제(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임자운, 변호사)
3.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의 필요성 : 반도체 3사 직업병  
지원보상 사례(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쉬는 시간

♣ 지정토론: 한동균(이수진의원실 보좌관), 강태선(노동건강정책포럼 부대표)

♣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www.노동건강정책포럼.kr](http://www.노동건강정책포럼.kr)

# 목차

## 발 표

- 정보공개운동의 관점에서 본 산업안전보건관련 정보공개 현황과 과제....1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 .....12  
임자운 (변호사)
-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의 필요성 .....20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지 정 토 론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33  
한동균 (이수진 의원실 보좌관)
- 정보공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41  
강태선 (노동건강정책포럼 부대표)

# 정보공개운동의 관점에서 본 산업안전보건 정보공개 현황과 과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정보공개’란 무엇일까?** 일상적으로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법과 행정의 용어에서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통해 규정된 정보공개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제2조 1호)을 뜻한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직무를 위해 만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받은 사항의 대부분이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2호)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제9조 제1항)

이렇게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비공개 근거가 있다면 일부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개가 원칙, 비공개가 예외”다.

접수번호	7858543	접수일자	2021.05.27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통지일자	2021.06.30
청구내용	<p>아래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p> <p>1. 2015년 ~ 2021년 현재까지의 근로감독결과에 따른 산업법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조치대상 사업장명, 산업법 위반내용, 시정지시 내용, 위반사항 조치내용, 행정조치 병과 내역 포함 바랍니다.</p> <p>2. 2015년 ~ 2021년 기간동안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재해발생보고서[동규정 별지서식8에 해당]에 대해 정보 공개청구합니다. - 해당 정보 중 재해자 인적사항 정보는 비공개처리 바랍니다.</p>		
비공개내용	<p>근로감독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제4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 2번 요청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함</p>		

**하지만 현실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어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이에 대해 어떤 시정지시와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통지했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에 따라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속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4호 - 공개 될 경우 재판, 범죄 예방,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 개인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공개가 된다면 재판에 영향을 끼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것이다. 제4호, 제6호는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제7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정보공개법의 해당 조항에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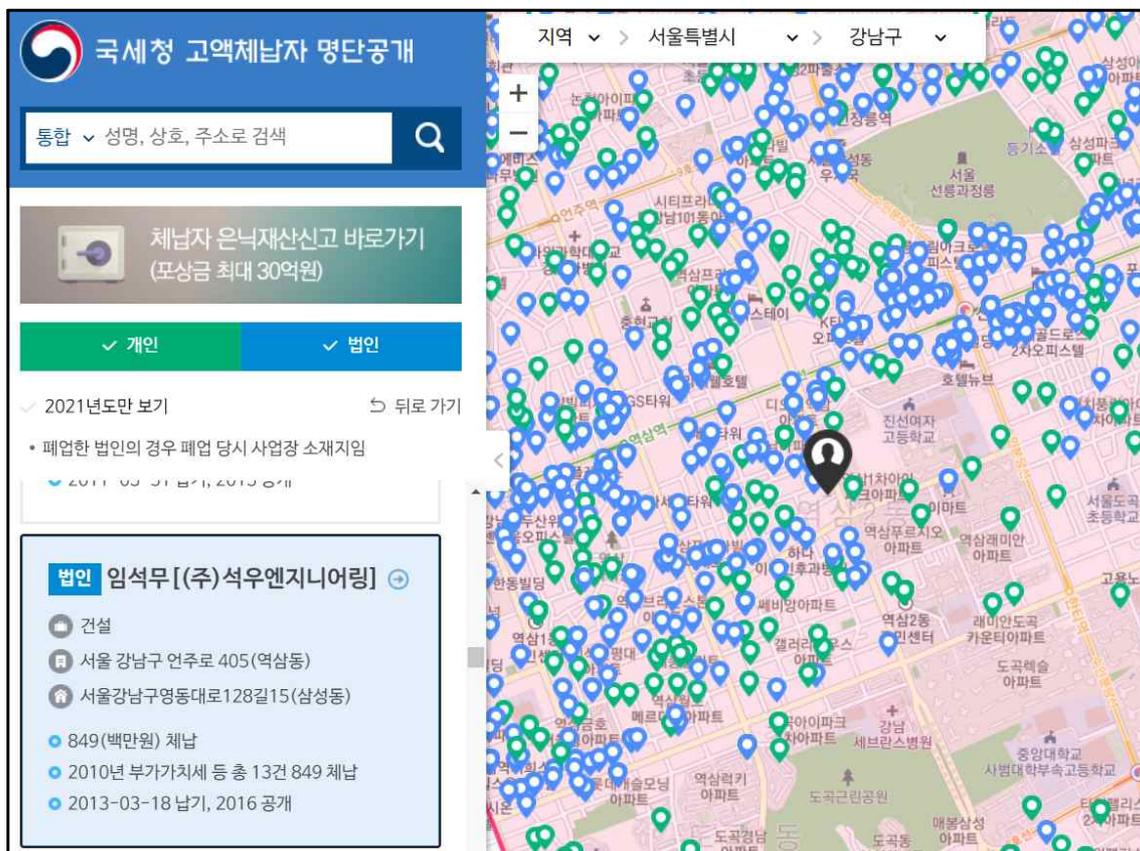
있는 정보”는 법인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이야 말로,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정보 아닐까?

식품업체정보업체명:Grit918			
인허가 정보			
업체명	Grit918	영업 인허가 종류	일반음식점
인허가번호	20180099083	전화번호	010****5566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24(지하1~지상 2층 서초동)	업태	기타
인허가 변경사항정보			
변경일자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사유
인허가변경사항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처분 정보			
기관명	위반사유	처분확정일자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물혼입 - 2022. 1. 18. 모찌모찌식빵에 라텍스장갑 조각 혼입(22.01.21 적발)	2022-04-06	시정명령
제조품목 정보			
품목제조번호	식품의 유형	제품명	일자
제조품목 정보가 없습니다.			

**문제는 유독 산업재해 관련 정보만**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식품안전나라](#)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전국의 음식점, 식품업체, 위생용품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명단을 검색할 수 있다. 업종별로, 업체명으로, 대표자명으로 모두 검색 가능하다. 내 주변 음식점 중에서 좀 찜찜한 음식점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Grit918은 혹시 여기 변호사님이 계시면 서울중앙지법 가시면서 많이 지나쳤을 베이커리 카페인데, 식빵에 라텍스 장갑이 혼입되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하니 가지 마십쇼…)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이야말로 식당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핵심적인 정보이지만,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기도 하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는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게재하여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사한 제도로 국세징수법에서는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표를 들 수 있다. 개인의 성명, 주소, 사업체명, 사업체 주소, 체납 액수 등이 공개되고, 심지어 그 걸 지도로까지 만들어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우리 동네에 어디 사는 누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지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으로는 그냥 명단을 공개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친절하게 지도까지 만들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이 더 압박감을 느껴서, 체납한 세금을 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가 있다. (산안법 제10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장 명단 및 사고 이유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중처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이 정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홈페이지 비교) 식약처, 국세청과 비교하면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다루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렇게 찾아 찾아 들어가

도, 덜렁 PDF로 된 표만 공개 된다. 국세청처럼 지도까지 만들어서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 식약처처럼 검색은 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공개하는 정보 역시 식약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The main navigation includes '민원',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 and '이용안내'. The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section is active. A search bar contains the text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Below the search bar, a table lists search results with columns for '번호' (No.), '제목' (Title), '담당부서' (Responsible Agency), '첨부파일' (Attachment), '등록일' (Registration Date), and '조회' (Views).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13	2021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1.12.29	4593
12	2020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2021.02.10	11568
11	2019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2019.12.31	15370
10	2018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2018.12.28	9095

**1.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378개소)

지역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중대 재해 자수 (명)	근로 자수 (명)	재해 자수 (명)	재해율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
서울	건설업	500~999인	효성중공업(주)(원청) 엠에스월드 주식회사(하청) (국제발달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9 (한강로3가)	1	933	4	0.43	0.32
서울	건설업	100~299인	태건건설(주)(하청) (흥대 CGV 복합물 신축공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외 1필지	1	100	6	6.00	0.48
서울	건설업	100~299인	대로건설(주)(하청)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IA56))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85번지	1	285	3	1.05	0.48
서울	건설업	100~299인	대보건설(주)(원청) ㈜아이텍파워(하청) (가산동2차 hausD-WISE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19	1	101	2	1.98	0.48
서울	건설업	100~299인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이테크건설(주)(원청) (주)해림건설(하청) (성수동 THE LIV 세종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3-52번지 외 2필지	1	103	2	1.94	0.48
서울	건설업	100~299인	중흥토건(주)(원청) 호람건설(주)(하청)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3-300번지 일대	1	143	1	0.70	0.48
서울	건설업	50~99인	동성건설(주) (영등포동1가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축))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1-56번지	1	63	2	3.17	0.74

**더 화가 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국세징수법, 그리고 산업안전법 상 명단 공표 방식을 규정한 법령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유독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이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의지 문제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 일반 일간 신문 등에 게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5항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 "관보, 전국 일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한 의심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냥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분명한 증거들이 존재한다.

**공공데이터 제도**는 정보공개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날 것의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공공데이터 제도에 따라 받아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데이터 형태로 가공 가능한 정보들은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통해 데이터로 받아 볼 수 있다. 만약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제공을 거부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공공데이터 제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조정된 안으로 제공할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에 한 시민이 기업의 환경정보, 고용, 산업재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CSR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기업별 산업재해 현황, 노동조합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 등의 데이터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고, 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했고, 해당 신청자는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재차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는 해당 데이터, 신청인의 요청,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근거,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한 후 '기업별 산업재해 현황' 데이터는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 시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재해가 포함' 되었음을 표시하고 이용하라고 권고 했다. 신청자는 조정안을 받아 들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유의 소명 없이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는 이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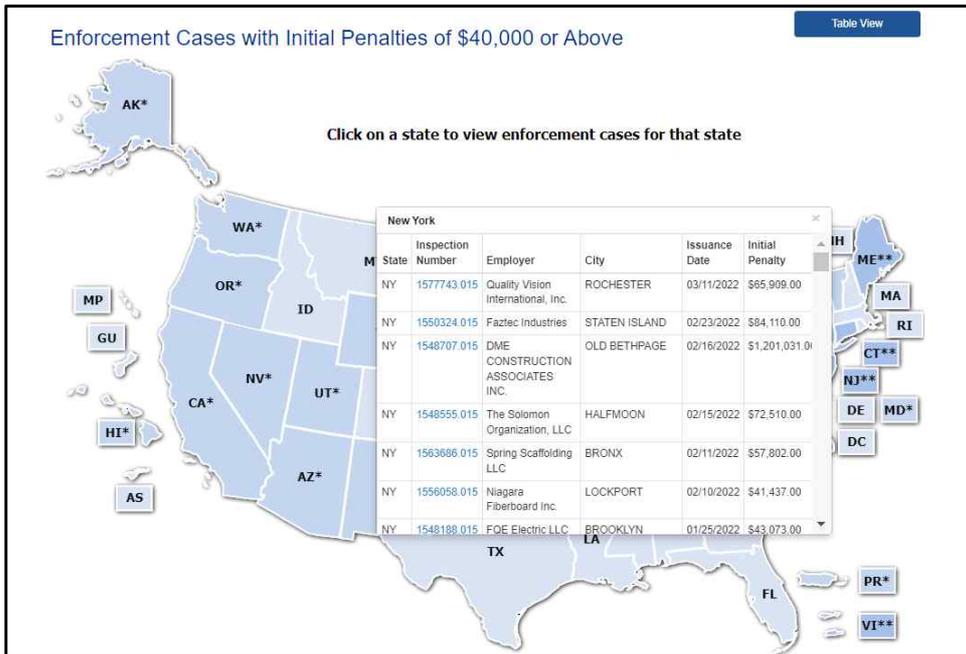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지 40년이 지났고, 산재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지는 이제 20년이 되었다. 개정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어떤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전문가 분들의 노력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 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공표 조항은 많은 한계(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 공개 기한을 1년으로 제한)를 가지고 있으며, 공표 방식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별 차이 없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공개를 넘어서, 어떻게 공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Reports of fatalities for CY17-21. (The information is not comprehensive. We continue to update it as data becomes available).  
 Fatality summaries are listed in descending order from newest to oldest.

Date of Incident	City	Select State	Hazard Description	Inspection Number	Federal or State Plan	Citation Issued Related to Fatality
Date	City	Select State	Keyword	Number	Select Category	Select Yes or No
01/18/2022	Moreno Valley	CA	James Fiddler (56) fatally injured in fall from truck bed.	1571835	Federal	No
12/13/2021	Kilauea	HI	Brian Hendrickson (32) fatally struck by object.	1534928	State	No
12/11/2021	Newark	NJ	Jose Villa Mendez (31) fatally crushed in trench collapse.	1540354	State	No
12/10/2021	Austin	TX	Hector Borges (40) fatally struck by falling pipe.	1540514	State	Yes
12/09/2021	San Bernardino	CA	Rudolpho Martinez (40) electrocuted when rebar contacted power line.	1542169	State	No
12/08/2021	Hilo	HI	Miguel Penaloza (36) fatally shot by shoplifter.	1542269	State	No
12/06/2021	Johnstown	PA	Troy Lohuis (47) fatally stuck by vehicle.	1544487	State	No
12/05/2021	Woodfin	NC	Christian Palma (27) died in fall from ladder.	1544491	State	No
12/04/2021	Dassel	MN	Carlos Gonzalez (61) fatally struck by skid-steer.	1545275	State	No
11/27/2021	Saint Cloud	MN	Michael Radford (17) drowned when mower overturned in pond.	1546337	State	Yes



먼저, 공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OSHA의 경우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행된 사망사고에 대해 홈페이지에 사고 내역을 공개하는데, 사고일시, 사고 설명 및 개요, 사고자의 나이 및 성별, 직업, 사고 정도, 사고 유형, 처벌 내역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태료가 4만 달러가 넘어가는 안전 보건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여 누구나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업장 별 산업재해 데이터가 공개 된다면, 앞서 소개했던 공공데이터 분쟁 사례의 신청인처럼 기업의 ESG 등급을 매기는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사고 내역을 비교해 사업장 안전 개선을 요구하거나, 산업재해가 잦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 운동을 제안하는 등 여러 경로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이 단순한 공개를 넘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잡코리아, 알바몬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공고를 낼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업주라는 사실을 구직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구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이들 구인구직플랫폼의 경우 아예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인공고를 필터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명단 공표 제도와 직업안정법의 의무 조항이 콜라보를 이룬 셈이다.

알바 지원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지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합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 | 총 863건

대표자, 사업장명 검색 🔍

대표자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원)
가정수	(주)광야환경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26 (읍내동)	61,307,565원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공고에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면 적어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이 기업이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 위험한 사업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역으로 구인을 해야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더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실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워크넷이나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손쉽게 기업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해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정보공개 운동**은 시민의 알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운동이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인해 부족하게나마, 행정 영역의 투명성은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 누가 집권하든 ‘투명한 정부’라는 명분을 부정하긴 어려우니까, 더욱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독,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분야에서만큼은 정보공개는 진전이 더디게 이뤄졌고, 심지어 최근에는 산업 기술 보호라는 명분으로 여야 모두 한 뜻으로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크게 후퇴시키는 일마저 벌어졌다. 정보공개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앞서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살펴 봤듯이 똑같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함이 되었을 때, 소비자의 영역에서는 그나마 공개가 개선 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문제가 되었을 때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걱정하는 편에 선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 건강의 영역이야 말로 정보공개 운동에 있어서 제일 참여한 갈등이 계속 될 영역이라 생각한다.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알권리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할 수 있길 바란다.

#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 : 현황과 개선방향

임자운 (변호사)

## I. 들어가며

1)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정부는 각각 어떠한 자료를 수집(작성)·관리(보관)할까.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 자료들에 얼마나 접근가능할까. 본 발제문은 이 문제를 다룬다.

이번 발제문에서는 해당 자료, 즉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라 칭한다. 이 표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가 2017. 1. 11.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을 만들면서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의<sup>1)</sup>가 제시된 바 있다. 2016년 11월에 발의되었던 산안법 개정안(노동자 알권리법)에도 ‘안전보건자료’라는 개념을 산안법에 도입하는 것이 제안된 바 있다.

2)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선 노동건강권이 온전하게 노동자의 ‘권리’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얘기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개별 노동자의 주체성 확립의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산재 예방대책은 대체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을 올바른 규제 및 처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서 그렇듯, 노동건강권 문제에서도 규제와 처벌은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 특히 취급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물질과 공정 기술의 계속된 변화에 따라 노동자가 처하는 위험의 종류와 형태도 계속 바뀔 수 밖에 없는 반도체 사업장과 같은 공간에서는 규제와 처벌을 통한 노동건강권 실현이라는 것이 매우 허황된 생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개별 노동자에게 자신의 생명·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권리)을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온전히 통제될 수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보다 노동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3) 그러한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알권리’다. 개별 노동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지 못하는 위험에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 알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정보를 생산 및 관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효과가 반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 II. 현행 산안법상 노동자의 알권리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알권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안전보건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사업주-노동자’의 관계가 아닌 ‘국가-사업주’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가 지켜야할 각종 규범들, 그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관련 내용들이 주를 이룰 뿐, 개별 노동자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규정은 매우 적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는 ‘사업주의 알림·표시·비치·교육·참여권 보장 의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뿐<sup>2)</sup>, 개별 노동자가 국가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정보공개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알권리 관계 규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산업법 제112조 제10항<sup>3)4)</sup> 정도가 거의 유일한 예외로 보이는데,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대상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로 한정할 뿐 아니라 권리 주체를 ‘근로자 대표’라고 하여 개별 노동자의 주체성도 모호하다. 청구 요건을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 범위도 너무 좁다. 둘째, 노동자가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등을 상대로 정보제공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 조항(구 산안법 제41조 제11항)은 오래전부터

조문	표제	알권리 보장 방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의 정보 제공 의무
제34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사업주의 게시 및 알림 의무
제37조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의 표지 부착 의무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사업주의 게시 및 알림 의무
제29조 이하	안전보건 교육	사업주의 교육 의무
제85조	안전인증 등의 표시	사업주의 표시 의무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사업주의 작성·제공 의무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등	참여권 보장 및 사업주의 알림 의무
제129조	건강진단	참여권 보장 및 사업주의 알림 의무
제47조	안전·보건진단 등	근로자 대표의 참여권 보장
제155조	감독상의 조치	사업주의 게시 의무(집무규정 16조 3항)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제10항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근로자대표, 역학조사 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산안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2조제10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법 제112조제10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법 제112조제10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제6호의 경우 위원회를 말한다)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0조(대체자료의 제공 방법)

법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이를 요구한 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자료

명칭(조항)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110조 이하)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제품명, 구성물질, 유해 위험성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125조 이하)	사업장내 유해물질의 노출 및 관리 실태
건강진단결과 (129조 이하)	노동자의 건강문제
역학조사 보고서(141조)	노동자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42조)	5)
공정안전보고서(44조)	6)
안전보건진단보고서(47조)	산재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결과
근로감독 결과(155조) <sup>7)</sup>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자료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2017. 1. 11.)>

- (정보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로서
  - 물질안전보건자료(법 제41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법 제42조), 역학조사보고서(법 제43조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8조), 안전보건진단보고서(법 제49조),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등을 말함

<안전보건자료의 합리적 공개방안(2018. 김수근)>

- 5)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안전보건공단)
-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 제도” (안전보건공단)
- 7)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등

〈표 1〉 고용노동부가 보관·관리하는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자료(현행법)	제출의무	심사대상	개정안
물질안전보건자료(제41조)	-	-	제113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제42조)	사업주	-	제130조
건강진단결과(제43조)	건강진단기관	-	제139조
역학조사보고서(제43조의2)	자체	심사	제146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제48조)	사업주	심사	제41조
안전·보건진단보고서(제49조)	진단기관	-	제47조
공정안전보고서(제49조의2)	사업주	심사	제43조

### 3.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명칭(조항)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110조 이하)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114조 1항)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125조 이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에게 알려야”(125조 6항)
건강진단결과 (129조 이하)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134조 1항)
역학조사 보고서(141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42조 5항)
공정안전보고서(44조)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45조 2항)
안전보건진단보고서(47조)	-
근로감독 결과(155조) <sup>8)</sup>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하여야”(집무규정 16조 3항)

위 규정들에 따라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개 의무가 있을 뿐이다.

8)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등

그 외의 자료들에 대한 알권리와 퇴직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등의 알권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대상 정보와 그 보관 기관이 제한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대상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sup>9)</sup>, 그때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사업주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고 있다<sup>10)</sup>.

### III. 산안법 개정 제안<sup>11)</sup>

#### 1. 「전·현직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는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과는 권리 주체와 대상 정보의 범위가 다르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 주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영업비밀은 기본적으로 경쟁회사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그 회사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특히 노동자의 건강·생명과 관련된 정보를 대상으로 주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12)</sup>.

물론 회사의 정당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알권리 남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남용의 문제는 위와 같은 대원칙을 전제한 후, 남용행위(예컨대, 현직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청구한 후, 그 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써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전·현직 노동자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의 공개 요청에 대하여도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0)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한 산안공단의 '종합진단 보고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분을 내린바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산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 있어도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보고서 전체에 대한 회신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가리워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1) 2015. 11.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기고문 일부 수정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

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제안하는 독립 심의기구가 대상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2. 관련 정보를 관리·보관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은 노동계, 산업위생·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된 심의기구에게 맡겨야 한다.

알권리 보장의 '실효성' 측면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주체를 '사업주'로 정해 놓으면 알권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측이 자의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면 그때마다 행정청이나 법원을 상대로 권리구제 요청을 해야 하고, 사측이 대상 정보를 '애초부터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이미 폐기했다'고 해버리면 권리구제 요청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동자의 연대권이 억압되는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부담이다. 실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취급물질의 성분이나 유해성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현장 분위기가 있었다"고 토로해 왔다.

한편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이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계와 산업보건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심의기구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에게 맡기면 노동부의 의지에 너무 많은 것이 좌우되고 만다. 정보 관리와 공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심의기구에 정보공개,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수집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 정보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행정조직상 관련 정보의 보관·관리는 고용노동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관련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게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산안법상으로도 고용노동부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나<sup>13)</sup>,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 조사·수집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

13)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와 그 적정성 및 이행여부를 심사한 자료,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건강진단 결과, 역학조사 결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보건 진단의 결과, 특별 감독의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정보가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한 곳에 체계적으로 모아둘 필요가 있다.

보관 기간도 중요하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얻을 수 있는 질환 중에는 유해요인 노출 후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질병들이 많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는 충분히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에게만 일부 자료의 보관 의무를 정하고 있고(제164조), 정부 기관 보관 자료는 담당 기관의 내부 규칙(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 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제각각이다.

#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의 필요성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 필요성: 반도체 3사 직업병 지원 보상 사례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2022.04.19 @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건강연대 

# 반도체 건강 영향 연구의 맥락

- 역학 연구를 추동한 요인들
  - 노동자 혹은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피해 주장
  - 법적 분쟁: 산재 보상 등 피해 보상 요구
  - 대부분 암과 생식보건 문제에 집중
- 글로벌 공급망에 배태되어 있음
  - 빠른 기술 변화
  - 지리적 역할 분담과 노출 요인의 차이



\*source: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BEYOND BORDERSTHE GLOBAL SEMICONDUCTOR VALUE CHAIN: How an Interconnected Industry Promotes Innovation and Growth. May 2016

2

## Cancer study



# Reproductive health study



4



▲ Kim Mi-yeon at home in Suwon, nicknamed Samsung City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company's factories there. Kim worked in one for 15 years. Later she suffered from infertility and uterine cancer. PHOTOGRAPHER: ANASTASIA TAYLOR-LIND FOR BLOOMBERG BUSINESSWEEK

“They said I was infertile, but that they didn’t know why”

Kim Mi-yeon, 38

**Bloomberg Businessweek**

## American Chipmakers Had a Toxic Problem. Then They Outsourced It

Twenty-five years ago, U.S. tech companies pledged to stop using chemicals that caused miscarriages and birth defects. They failed to ensure that their Asian suppliers did the same.

By Cam Simpson

**PLOS ONE**

RESEARCH ARTICLE

## Reproductive Hazards Still Persist in the Microelectronics Industry: Increased Risk of Spontaneous Abortion and Menstrual Aberration among Female Workers in the Microelectronics Industry in South Korea

Inah Kim<sup>1</sup>, Myoung-Hee Kim<sup>2\*</sup>, Sinye Lim<sup>3</sup>

5

# 국내 상황의 전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및 SK하이닉스 '신재 논란' 10년 일지						
2005년 6월 황유미(21)·기흥공장 오래래(46)씨 백혈병 진단 2007년 3월 황유미씨 백혈병으로 사망 6월 황유미씨 유족 신재 신청 11월 반올림 출범	4월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신재 신청 	1월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신재 행정소송 제기	6월 황유미씨 유족 '백혈병 신재' 1심 승소 	4월 근로복지공단, '재생활양성 비율'(2009년 기준) 50%에 첫 신재 승인 · 근로복지공단, 유방암(2009년) · 기흥공장 오래래씨 첫 신재 승인	10월 김경미(29)·2009년 새·기흥공장 오래래 씨 유족 '백혈병 신재' 1심 승소 12월 삼성전자-반올림 첫 본협상 	2월 황유미씨 심화 다룬 영화 (또 하나의 비극) 개봉 5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 "피해자에 사과"
2005~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5년 7월 ○○○○(2)·이·이현공장 현영씨 백혈병으로 사망 2006년 7월 이이우(21)·이·이현공장 오래래(46)씨 백혈병으로 사망	11월 정철모(24)·이현공장 현영(46)씨 비호지진 침프중으로 사망 *12월 정부 '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 건강영향 실태조사' 완료	5월 김진기(38)·황우공 ·레나(36)·이·이현 백혈병으로 사망 	4월 정철모씨 유족, 신재 행정소송 제기 	1월 송이우(24)·이현공장 현영(46)씨 백혈병으로 사망 3월 근로복지공단, 백혈병(2009년) 첫 신재 승인 12월 정철모씨 '신재 소송' 항소	7월 하이닉스, 올 상반기 영업이익 2조원 돌파 *6월 정부, '반도체 사업장 추진연구 및 사업자와 발생자 집계현황'(2008~2010년) 문수이 위원실예 보고	

\* 출처: 한겨레 2014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8686.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8686.html)

6

## [단독]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연재 [심층 리포트]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f t s l ★ 📄 가

백혈병 등 '반도체 직업병' 지난 20년간 최소 17명 사망  
삼성보다 사망률 높아...신재 인정 받은건 단 1건 불과

- "반도체 신물질 위험성 거르는 절차 거쳐야"
- '삼성전자 백혈병 협상' 지지부진
- [단독] 뇌종양 제보도 많은데 조사 안해...기업 뒤로 숨은 정부
- [단독] 하이닉스 "발병 현황·작업 환경 실태조사 하겠다"
- 유해물질 경보 월평균 52회...삼성의 17배



### [단독] 하이닉스 "발병 현황·작업 환경 실태조사 하겠다"

전직·협력사 직원 지원책 마련키로...직업병 인과성은 부인

심층 리포트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의혹이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투병중인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정밀한 실태조사, 작업환경 개선 등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발병 현황과 작업환경 실태 등을 다룬 <한겨레> 심층리포트(7월28일치 145면, 8월4일치 15면 '또 하나의 비극, 하이닉스') 이후 2주 만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 출처: 한겨레 2014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62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620.html)

7

# 반도체 3사의 '지원 보상' 제도

2014년 산업보건검증위원회 → 2016년 1월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

## SK하이닉스 및 협력사 구성원 지원·보상 접수 창구

SK하이닉스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매 순간 함께해 온 구성원과 협력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사는 지난 1년간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 중심의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작업환경과 건강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과학기술 범위에서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회사의 지속경영을 위해 새로운 지원 보상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회사와 독립적 지위를 갖는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출처: <https://www.ohscc.org/index.jsp>

8

**대상 기준**

지원대상은 1999년 10월 14일 현대전자산업(주)와 (주)LG 반도체의 합병 이후에 근무 이력이 확인된 자로,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구성원(협력사는 반도체 제조사업장에 근무한 생산직 구성원)으로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 소속으로 1999년 10월 14일 이전에 근무한 사실을 본인이 입증<sup>3)</sup> 한 자로서 회사의 반도체 업무에 1년 이상 상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0년 이내에 업무 상환 질병 등이 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SK하이닉스		협력사	
소속	SK하이닉스	소속	SK하이닉스 상주협력업체
직무	SK하이닉스 구성원 <sup>1)</sup>	직무	제품 제조사업장(On-site, 상주) 생산직 근무자
시작 기준	과거 회사(현대전자산업(주)와 (주)LG 반도체)의 반도체 사업 근무자로 최소 1년 이상 재직한 구성원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	시작 기준	1999년 10월 14일 이후부터 근무 이력 확인자 <sup>2)</sup> * SK하이닉스 생산라인 배치일 기준
재직 기간	1년 이상 * SK하이닉스 발령일 기준	재직 기간	1년 이상 * SK하이닉스 생산라인 배치일 기준

1) 생산직 외에도 일정 주기(빈도)와 시간(강도)으로 현장을 출입하는 자는 심의 결정에 반영됩니다.  
2) 퇴직 후 10년내 발병자에 한정합니다.  
3) 근무한 사실을 본인이 입증: 직무형태, 작업위치, 근무기간, 근무시작연도, 교대근무 등(본인 진술 및 동료 진술, 사진, 급여명세서 등)  
4) 신청기한:  
- 기준질관: 진단(발병)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확대질관:  
① 변경 이전(20년 1월 25일)에 발병/진단 받은 대상자: 2023년 1월 24일까지  
② 변경 이후(20년 1월 25일~)에 발병/진단 받은 대상자: 진단(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  
\* 다만, 퇴직자로 생산라인 미출입자의 확대질관에 대한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질관:  
① 2016.1.25이전 진단: 신청 마감  
② 2016.1.25이후 진단: 하이닉스 재직 중 진단된 경우로 진단(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확대질관:  
① 2016.1.25이전 진단: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 진단된 경우로 2023년 1월 24일까지 신청  
② 2016.1.25이후 진단: 하이닉스 재직 중 진단된 경우로 2023년 1월 24일까지 신청 또는 진단(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출처: <https://www.ohscc.org/index.jsp>

9

대상 질병		
구분	질병명	발병 시기
지원보상 기준	갑상선암(C73), 뇌종양(C70~C72)	
지원보상 나oun	위암(C16), 전립선암(C61), 직장암(C20), 악성흑색종(C43), 췌장암(C25), 난소암(C56), 유방암(C50), 백혈병(C91~C95), 다발성골수종(C90), 폐암 및 호흡기계 암(C33~C34), 기타 조혈기계 질환(3개 질환), 비호지킨림프종(C82~C86), 기타 희귀암(18개 질환)	퇴직후 10년 내
복지지원 군	희귀난치성질환(8개 질환), 자녀질환 <sup>1)</sup> : 자녀소아암(C00~C97, D45~D47, D60, D61),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8), 자녀의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125개 질환)	
확대지원 군	기존질환 외 KCD <sup>2)</sup> 질병분류 코드 『C**』	

대상질병은 1) 지원 보상 대상질환은 비록 인과관계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검증 위원회의 연구조사를 통해 높은 발병률이 확인된 질병을 포함하고,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계의 연구결과, 반도체산업에서의 암 및 생식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업무상 질병 신청 및 판정결과와 판결례, 기타 전기전자산업 일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단 한번이라도 상관관계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된 질병 모두를 포함

2) '복지지원대상 질환'은 그 밖에도 노동자 '건강보호와 배려지원'의 원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자녀의 소아암, 자녀의 선천성희귀난치성질환(125개 질환)

3) '확대질환'은 2019년 임·단협 및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 결를 통하여 확대된 질병을 포함

1) 부모 중 1인이 임신3개월 전부터 출생 사이에 SK하이닉스에서 상시적 근무 사실이 있고 19세 되기 전에 발병한 자녀로 한정 (단, 합력사 자녀결환의 경우는 부모 중 1인이 임신3개월 전부터 출생 사이에 제품제조사업장에서 상시적 근무 사실이 있고 19세 되기 전에 발병한 자녀로 한정)

2) KCD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

\* 자연유전은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구성원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사내 SHE Portal(she.skhyunik.com)에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인 경우 원발부위입만을 지원보상 대상으로 한다.

\* 출처: <https://www.ohscc.org/index.jsp>

10

## 2016년 산업보건학회 연구용역 → 2017년 7월 산업보건지원보상 운영위원회

산업보건 지원보상
사이트 안내
지원보상 신청/확인
로그인

---

### 제도 소개

“ 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LG 디스플레이는 회사 발전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구성원과 협력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회사는 미래지향적인 산업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산업보건학회'에 의뢰,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수준을 진단하였습니다.

건강영향의 원인을 밝히는데 과학적인 한계가 있었으나, 학회는 구성원 건강보호와 배려,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원보상제도 마련을 제안하였고, 회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제3차 기구인 'LG 디스플레이 산업보건 지원보상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는 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출처: <https://www.ohcare.org:6200/main.do>

11

대상기준	대상질환	지원보상금액산정방법
<p>※ 질병 발생 이후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p>		
대상	질환	대상기준
본인	암 희귀 질환	1년 이상 시 근무 이력 있는 ① LGD 재직자 <sup>1)</sup> , 퇴직자 ②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 로서 퇴직 후 10년 이내, 65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생식 질환 <sup>2)</sup>	① LGD 재직, 퇴직 여성 ② 사내상주협력사 재직, 퇴직 여성 에게 발생한 자연유산으로서 임신 3개월 전 ~ 자연유산 사이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자녀	자녀 질환 <sup>3)</sup>	남성은 임신 3개월 전 ~ 임신 여성은 임신 3개월 전 ~ 출산 사이 1개월 이상 근무한 ① LGD 재직자, 퇴직자의 자녀 ②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의 자녀로서 자녀 나이 만 19세 이전에 발병한 경우
<p>1) 재직자: FSE 및 휴직자 포함 2) 3) 생식질환과 자녀질환은 근무이력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보상대상에 포함됨</p>		

\* 출처: <https://www.ohcare.org:6200/main.do>

12

대상기준	대상질환	지원보상금액산정방법
<input type="button" value="↓ 질병코드 확인"/>		
구분	질환명	발병시기
암	백혈병, 기타 조혈기계 암, 다발성골수종, 악성종피종, 뇌종양(양성종양 포함), 중추신경계암, 유방암, 비호지킨 림프종, 폐암 및 호흡기계 암, 방광암, 위암(여성), 신장암(여성)	만 65세 이전
희귀질환	베게너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중후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파킨슨 병, 다발성경화증, 특발성 폐섬유증	만 65세 이전
자녀질환 1)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암	자녀 나이 만 19세 이전
생식질환 2)	습관유산자, 포상기태, 기타 비정상적 수태 부산물, 자연 유산, 의학적 유산, 기타 유산, 상세불명의 유산, 자궁내 태아사망의 산모관리, 상세불명 원인의 태아사망, 분만의 결과	
<p>1) 지원보상 대상자가 남성인 경우 자녀의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시점까지, 여성인 경우 임신 3개월 전부터 출산 사이에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무한 무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대상임. 2) 생식질환은 임신 3개월 전 ~ 자연 유산 발생시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한 여직원 본인의 자연유산에 해당됨. (최대 3회)</p>		

\* 출처: <https://www.ohcare.org:6200/main.do>

13

2015년 자체 보상 → 2018년 12월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

지원보상 제도 서류 접수 안내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지원보상 신청/확인 로그인

2018년 12월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LCD사업장 근무자들의 질병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은 독립기구로서, 2018년 11월 23일 합의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서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보상 절차



\* 출처: <http://www.ohsec.or.kr/>

14

대상 기준	대상 질병	지원보상액 산정
지원 대상은 1984년 5월 17일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장에 제1라인을 준공한 이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구분	대상기준	
암	(1) 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 (2)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회귀질환	(1) 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 (2)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생식 질환	(1) 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여성 재직자, 퇴직자 (2)임신 전 3개월~ 출산(유산)까지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자녀 질환	(1) 삼성전자 및 사내상주협력사 재직자, 퇴직자 자녀 (2)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전 3개월~ 임신까지, 여성의 경우 임신 전 3개월~ 출산 사이에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 1개월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	

\* 출처: <http://www.ohsec.or.kr/>

15

대상 기준	대상 질병		지원보상액 산정	
<a href="#">↓ 보상대상 질병리스트</a>				
구분	질병명		발병시기	
암 <sup>1)</sup>	- 백혈병 - 흑색종 - 췌장암 - 회귀암 22종	- 다발성골수종 - 전립선암 - 신장암 - 뇌종양(양성종양)	- 기타 혈액질환 - 직장암 - 위암(여성) - 정맥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 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C88.4)	• 만 65세 전 • 퇴직 후 10년 이내 발병
	- 비호지킨림프종 - 난소암	- 뇌종양 및 중추신경계암 - 유방암	- 폐암 및 호흡기계 암	• 만 65세 전 • 퇴직 후 15년 이내 발병
회귀 질환	- 다발성경화증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특발성폐섬유증 - 특발성 혈소판감소증	- 쇼그렌증후군 - 베게너 육아종증 - 파킨슨 병	- 전신경화증 - 전신성 홍반루푸스 - 스틸병	• 만 65세 전 • 퇴직 후 5년 이내 발병
생식 질환	- 습관유산자 - 기타 비정상적 수태 부산물 - 의학적유산 - 상세불명의 유산 - 상세불명 원인의 태아사망 - 쌍둥이, 하나는 생존출생 하나는 사산아 - 기타 다태아분만, 일부 생존 출생 - 하나 이상의 태아 유산 후 다태임신의 계속 - 하나 이상의 태아의 자궁 내 사망 후 지속되는 임신	- 포상기태 - 자연 유산 - 기타유산 - 자궁 내 태아사망의 산모관리 - 단일사산아 - 쌍둥이, 둘 다 사산아 - 기타 다태아분만, 모두 사산아		
자녀 질환	- 선천성 기형 - 소아암	- 기타 회귀자녀질환		• 자녀 나이 만19세 전

1) 단, 원발성 종양만을 대상으로 함.  
2) 자녀 회귀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국가관리대상 회귀질환 지정목록에 따름.

\* 출처: <http://www.ohsec.or.kr/>

16

##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 142억원 지급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 지원 보상 종결"

산업일보 | 입력: 2020/06/12 16:42 | 수정: 2020/06/12 16:43

400건 중 생식질환은 183건, 암은 170건, 자녀질환 26건, 회귀질환 21건 등이었다. 암의 경우 유방암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호지킨림프종 등 혈액암이 47건, 폐암 18건, 위암(여성) 10건,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암 9건, 양성 뇌종양 8건, 신장암 6건이 있었다.

## [단독] SK하이닉스, 직업병 의심사례 820건 보상... "보상금 총액은 최대 70억원 추정"

황민규 기자

입력 2017.11.29 15:48 | 수정 2017.11.29 17:36



29일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사업장 내 직업병 의심 사례로 지원보상이 결정된 건수는 약 100여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이 26건, 위암이 18건, 비호지킨림프종이 10건, 백혈병이 9건 등이다.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00612163404>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219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2194.html)

17

## Potential risk factors for haematological cancers in semiconductor workers

K. Lee<sup>1</sup>, S.-G. Kim<sup>2</sup> and D. Kim<sup>3</sup>

<b>Background</b>	There has recently been increased interest in cancer incidence in electronics workers.
<b>Aims</b>	To determine the cancer incidence ratio in electronics workers and the potential factors affecting the risk for development of cancer.
<b>Methods</b>	Epidemiological study performed in electronics workers who were employed between 1999 and 2008 in South Korea. Cancer incidence ratio was analysed with respect to departments, divisions, job titles, gender, age, hepatitis B and C virus infection and work duration. We compared the incidence of haematological cancer in this cohort with that expected in the general population.
<b>Results</b>	The study population was 56 283. Overall, the standardized incidence ratio (SIR) for haematological cancer was 0.85. In particular, the SIR for leukaemia was 0.86 and for non-Hodgkin lymphoma (NHL) was 0.93, which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IR for NH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SIR 5.23, 95% confidence interval (CI) 1.31–20.95] in female office workers. We also found that the SIR for NH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female workers who tested positive for hepatitis virus infection (SIR 7.69, 95% CI 1.08–54.60).
<b>Conclusions</b>	The raised SIR for NHL among female workers was due to potential risk factors such as hepatitis virus infection although additional research and an ongoing, long-term, prospective epidemiological cohort study is needed.
<b>Key words</b>	Epidemiology; haematological cancer; hepatitis virus; semiconductor worker.

18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2019, 1–11  
doi: 10.1093/annweh/wxz061  
Original Article



Original Article

### Semiconductor Work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s Associated with Male Worker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Kyung-Hwa Choi<sup>1</sup>, Hyunjoo Kim<sup>2\*</sup>, Myoung-Hee Kim<sup>3</sup> and Ho-Jang Kwon<sup>1</sup>

Kim et al.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17) 29:49  
DOI 10.1186/s40557-017-0204-x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RESEARCH ARTICLE Open Access



### The relationship between spontaneous abortion and female worker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Heechan Kim<sup>1</sup>, Ho-Jang Kwon<sup>2</sup>, Jeongbae Rhie<sup>1</sup>, Sinye Lim<sup>3</sup>, Yun-Dan Kang<sup>4</sup>, Sang-Yong Eom<sup>5</sup>, Hyungryul Lim<sup>2</sup>, Jun-Pyo Myong<sup>6\*</sup> and Sangchul Roh<sup>1\*</sup>

19

# 성과와 한계

- 성과
  - 개별적으로 원인적 연관성 입증하지 않고, 기존 역학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사전 정의된 질병 목록과 노출 조건에 따라 포괄적 지원 보상
  - 암, 희귀질환, 유산, 자녀 기형과 암 등 대상 광범위
  -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포괄
- 하지만...
  - 정보 비공개: 개인 정보 보호
  - (상세한 공정 이력 담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활용 불가
  - 반도체 3사 지원 보상 현황 공유되지 않음

20

# 정보 공유가 왜 필요한가?

- 1980년대 이래 미국 IBM 노동자, 공장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암 발병, 유산과 기형아 출산 등이 빈발
- 암에 걸린 노동자 두 명이 2003년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IBM 기업사망파일 (Corporate Mortality File) 사용을 법원으로부터 승인음
- 보스턴 대학 Richard Clapp 교수가 이를 분석하여 IBM 노동자의 암 초과 사망에 대한 두 편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
- 분석은 암 뿐 아니라 몇몇 다른 질환들에서도 초과 사망의 위험을 확인했지만 (예,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씨병) 결과는 미발표
- 또한 유산과 자녀 기형을 비롯한 여러 질환이 소송 과정에서 개별 조정으로 타결 (타결 과정과 보상 결과는 미공개)

	관찰 수	기대 수	비례사망비 (PMR)*	95% 신뢰구간	
<b>남성</b>					
총 사망	27,272	27,272.00	100.0	(하한)	(상한)
담노병	396	583.70	67.8*	61.6	74.7
심장병	9,044	9228.90	98.0*	96.4	99.6
암	7,697	7,206.21	106.8*	104.8	108.8
신경계 질환	501	439.31	114.0*	104.6	124.4
<b>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b>	<b>47</b>	<b>24.58</b>	<b>191.2*</b>	<b>144.4</b>	<b>253.1</b>
파킨슨 씨 병 (Parkinson's disease)	114	92.50	123.2*	102.7	147.9
루게릭 병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101	57.49	175.7*	145.0	212.9
<b>여성</b>					
총 사망	4,669	4,669.00	100.0		
담노병	68	142.90	47.6*	37.9	59.8
심장병	998	1,229.92	81.1*	77.1	85.5
암	1,667	1,454.39	114.6*	110.3	119.1
신경계 질환	96	101.06	95.0	78.0	115.7
<b>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b>	<b>18</b>	<b>12.55</b>	<b>143.5</b>	<b>90.7</b>	<b>226.9</b>
파킨슨 씨 병 (Parkinson's disease)	14	10.92	128.2	76.1	215.9
루게릭 병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16	11.31	141.5	86.9	230.2

\* 표시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1

# The health impacts of semiconductor production: an epidemiologic review

Myoung-Hee Kim<sup>1</sup>, Hyunjoo Kim<sup>2</sup>, Domyung Paek<sup>3</sup>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2014 VOL. 20 NO. 2

In addition, information on unusual events in one country needs to be shared across countries even prior to publication of scientific papers. By doing so, further research could be organized if necessary, and warning signals could be acted upon in accord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example, when some Korean workers afflicted with multiple sclerosis 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claimed workers' compensation, no scientific papers were found to support the work-relatedness of semiconductor production, though a number of papers have reported strong associations between organic solvent exposure and multiple sclerosis.<sup>96</sup> Later, we learned that the IBM PMR study also found elevated risks for these



홈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포츠 협동조합

### 황유미 씨 사망 8년...삼성, 조정권고안 수용해야

[기고] 공익법인 설립 거부 유감...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병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 | 기사입력 2015.08.04. 16:17:17 최종수정 2015.08.04. 16:18:47

- 보건학 연구자로서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보상/지원이 산재보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직업성 질환의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고, 엄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은 무척이나 진입장벽이 높은 사회보장 제도이다. 그나마 삼성 정도의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조정'이라도 가능하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한다는 말인가? 하청, 파견, 단기 계약직 같은 고용이 늘어날수록,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는데 말이다.
- 게다가 삼성 노동자들이 이러한 보상/지원에 만족하고 산재신청을 꺼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사례들은 직업병 통계에 잡히지 않을 테고, 그러면 다른 노동자가 비슷한 질병에 걸려도 전례가 없어서 산재로 인정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실제로 미국 IBM에서도 산재 청구나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건강문제를 경험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더더욱 공익법인을 구성하고 전체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 보상/지원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재 인정 이전이라도, 새로운 건강문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그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고 황유미 씨의 가족들이 백혈병을 그녀만의 특별한 비극이라 여기고 지나갔더라면, 아마 지금도 우리는 반도체 생산 작업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연대 함께 오래  
-노동 건강 연대-

# 노동건강정책포럼 2022년 2차 정기토론회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토론자 : 이수진 의원실(비례, 환노위) 한동균 보좌관

※ 이하 토론문은 안전보건 비전문가인 토론자가 토론 요청을 받고 쓴 글로 의원실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I. 서론

우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제가 초대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 홍보도 하고 작년 4월에 의원실에서 주최하였던 정책토론회의 내용(중대재해 통계와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체계화 방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추후 함께 또는 따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음.

#### ○ (홍보) 이수진 의원실 산업안전분야 활동내역

##### 1) 입법활동 (대표발의 법안)

- 특고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20.12.9 통과)
- 직장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행위자 처벌 근로기준법 개정안 (21.3.24 통과)
- 아프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도입 근기법 개정안 발의 (계류)
- 근로감독 권한 확대, 인원도 늘리는 근로감독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계류)
-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지방정부 협력 활성화 근기법 개정안 발의 (계류)
- 평택 컨테이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계류)
-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업 규제완화 조항 삭제 기업규제완화특별법 개정안 발의 (계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계류)
- 정부책임 하에 사람 건강관련 산업기술정보 공개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류)

##### 2) 산재현장 방문 ☞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노사정의 보고 및 건의를 청취

- 21. 5. 11 (화) 11:00 평택항 사고 현장 방문
- 21. 5. 18.(화) 15:00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방문
- 21. 5. 28.(금) 17:00 부산신항 (주)팬스타신항 물류센터 방문
- 21. 6. 8.(화) 12:30 현대중공업 방문  
15:30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방문
- 21. 9. 27.(월) 10:00 고용노동부 성남 지청방문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관련 대책 청취)
- 22. 1. 15.(토) 14:00 한전 하청노동자 유가족 간담회
- 22. 3. 16.(수) 15:30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재방문
- 22. 4. 1.(토) 12:30 현대중공업 재방문 및 노조간담회

### 3) 토론회 개최 (공동주최 포함)

- 20. 7. 2.(목) 10:00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도입을 위한 토론회」
- 20. 7. 9.(목) 14:00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현장대응과 향후 과제」
- 21. 4. 15.(목) 9:3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른 재해 통계와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체계화 방안 모색
- 21. 6. 17.(목) 10:30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 계획에 따른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
- 21. 7. 1.(목) 10:00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적용 첫 모의재판: 구의역 김군 사건」
- 21. 7. 13.(화) 14:00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괴롭힘과 정신건강」
- 21. 8. 9.(월)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21. 11. 11.(목) 14:00 「산재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토론회」

## II. 본론

### ○노동건강 관련 정보공개 Part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21. 4. 15. 를 중심으로 )

#### 1) 토론회의 주요 내용

##### ○ 기획의도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서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에 대해 그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산재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포털’을 구축해 중대 재해 통계와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발제자)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제언.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도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작성 하고 있지만, 조사 인원도, 기간도 불충분한 만큼, 이를 보완하여 적극적이고 명확한 재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함.

○ 필자가 느낀 노사정 컨센서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통계 및 조사결과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음. 사회적 파급이 큰 재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지는 정도의 공감대는 있었음.

- 이러한 노사정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 관련 일로 각자 분주하다가 실제로 진행된 사항이 없음.

2) 향후 (필자의)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토론회 당시 노사정 컨센서스에 기초해서 ‘동종 유사재해’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조사의견서의 공개를 추진할 생각임.

○ (공개범위)

재해자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법 조항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공개 원칙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종·유사재해’재발 방지를 노사 및 연구자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의 최대한 공개를 정부에 요청할 생각임.

- ☞ “어떻게 최소화하고, 어디까지 최대화해서 공개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이라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음. 이는 차기 정부의 의지,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논의 진행시 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바꾸려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시 노동건강정책 포럼 전문가분들의 조력이 있다면 크게 환영...

○ (공개시기)

토론회 발제 내용과 같이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 공개를 요청할 생각.

다만, 주요 재해 개요를 담은 ‘사고 속보’는 사고 발생 후 신속 공개를 요청할 생각.

○ (공개방법)

산재예방 포털 구축을 요청하고 예산지원 등 협력을 할 생각이고, 포털의 구축 전에는 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

○ (재해조사의견서 품질 제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되고, 인력이 충원될 경우를 가정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조사인력이 대폭 늘어났다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해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의견서 작성 매뉴얼 마련 등을 요청할 생각.

○ 노동건강 관련 정보공개 Part 2

( 발제문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

서두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이 분야 비전문가임을 밝히며 발제문을 읽고 드는 생각을 나열함.

○ 제 1발제문에서 지적하듯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가 핵심 쟁점인 듯함.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회에서도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통계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단' 제출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임.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이는 과거 산재발생 기업의 명단을 국회에 제공하였던 사례와 180도 달라진 상황이며, 들은 바에 따르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 해당 기업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으며 그 이상의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함.

<실제 사례>

- ※ 산업재해 현황은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통계법 상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활용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제 2발제문에서 기술하고 있듯, '퇴직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대상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때 사업주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국회도 예외가 아님.

○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 관련 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권 침해 보호 의무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자명해 보임.

- 이 부분을 (제9조 제1항 제7호와 그 단서조항 등)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타법과의 충돌 또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이 영역은 비전문가인 필자로서는 현재로서는 내용 보충의 능력이 안 되는 만큼 추후 전문가분들의 제안을 기대함).

○ 그 외에도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의문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회사에 의해) 제대로 기록되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실제 사례>

- 급성 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과 현장 노동자 13명이 동일한 급성 중독에 걸린 대흥알앤티....

이 두 회사에 세척제를 납품한 유성케미칼. 이 회사가 신고한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문제의 성분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이 아예 빠져있다. 유해 성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납품업체는 단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다보니 아예 신고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것이다.<sup>14)</sup>

○ 또한, 각종 자료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유로, 검찰 송치 전이라는 이유로, 지방관서에 흩어져 있어서 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거나 필요한 시기가 한 참 지나서 제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국회도 겪고 있음.

### III. 마치며

14) 뉴스타파 기사 '중대재해법 두 달① 아직, 김용균의 죽음은 되풀이된다'  
(22. 3. 30) 참조

○ 한편(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sup>15)</sup>이라고 차기 정부의 위정자들이 생각하고, 그러한 기초와 방향 하에 국정이 추진된다면, 정보공개법 등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이익을 침해할’에 방점이 찍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 아울러 차기 정부가 구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의 방향과 내용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식으로 전개된다면, 그나마 있는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의 존폐도 장담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임.

○ 지난 10년을 돌아해보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산업안전보건 운동의 결실, 경제적 성장에 따른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 추구,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입에 따른 국가 체질 개선 등) 지난 해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제도화되었다고 생각함(민식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물론 제도화를 앞두고 사회적 여론을 폭발시키는 점화(點火) 사건들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인식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여론이 모여 입법기관에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은 늘 있었음.

-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고는 (개혁이든 개혁이든) 제도변화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임. 그런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정보의 공개가 기업(산업)의 이익 보장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며 헌법상 기본권임을 알리고 여론을 모으는 작업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까지 방안과 계획이 마련되길 희망함.

○ 그 외 드는 생각을 두서없이 아래와 같이 나열하면

정보와 자료공개 관련 논의는 위와 같더라도 그렇다면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및 보상은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졌는지?

- ‘추정의 원칙’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가?

-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재해자 또는 유족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등이 지게 하면 어떨지?

- 선보상 후승인 제도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제도화해야 할지?

이상 토론을 마치며 귀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15) 매일노동뉴스 기사 “경제 밑에 노동, 노골화 하나” (22.04.13) 참조

## 정보공개,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노동건강정책포럼 정기토론회('22.4.19)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토론문

강태선 (노동건강정책포럼)

발제자들의 정보공개 또는 일하는 사람의 위험에 관한 '알권리' 보장에 관한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 본 토론자는 이에 덧붙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 공개, 검찰의 공소사실 공개가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냉동창고 화재 등과 같은 참사급 중대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은 선진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판례 비공개원칙에도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중 일부는 법적 처벌이 아닌 원인규명과 교훈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조사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도입되어야 한다.

오늘 발제 내용은 크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정보공개, 사업주의 당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알권리 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김예찬 발제자의 주장대로 고용노동부 등 당국의 중대재해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에 관한 포괄적이고 이용 가능한 형태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sup>16)</sup> 물론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한 행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의 정보공개 등과 같은 국내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형사적 규제인 정보공개는 수사와 처벌 등과 같은 형사적 제재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체계적인 정보공개시스템을 만들 경우 행정력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후자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 확대가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사전 위험 제거, 작업환경개선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른 사업장 관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전략적 관리감독 행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산업재해 관리는 일반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조사-환류'로 나뉜다. 예방에서 대응까지는 산업재해예방의 기본원칙이 복구에서 환류까지는 사고조사의 일반원칙이 관철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가장 잘 규정된 EU 입법지침들에 나오는 '정보공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16)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을 근거로 해당조문 제3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무시하고

## 1. 1. 산업재해예방의 기본원칙과 정보공개

### 가. (1) EU 산업안전보건 기본 입법지침

1989년 제정·공포된 EU 산업안전보건 기본 입법지침(EU OSH Framework Directive 89/391/EEC)은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원칙이 법제화된 가장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입법지침은 특히 현대 산업안전보건의 핵심 방법론인 위험성평가 제도가 EU 회원국에 규범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입법지침과 함께 6개의 개별 입법지침이 제정됐고 지금까지 19개의 산업안전보건 개별 입법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19개의 입법지침들은 모두 기본 입법지침의 원칙에 근거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사회심리학적 유해인자를 비롯하여 사업장, 설비, 표지, 개인보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20개의 EU OSH 입법지침들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 부문 정보공개에 보편적인 잣대라 할만하다. 오늘 발제에 관한 토론을 위해 이 입법지침들의 관련 내용을 참고했다.

### 나. (2) EU 89/391/EEC의 정보공개

<b>제1장(총칙)제1조와 제2장(사업주의무)제5조, 제6조 및 제10조</b>
<b>제1조 목적</b> 1. 이 지침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지침은 직업상 위험의 예방, 안전보건상 보호, 위험과 사고요인의 제거, <b>정보제공</b> , 근로자에 대한 자문(협의), 국내법에 부합되는 공정한 근로자참여,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에 대한 교육훈련과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일반 지침을 포함한다. 3. 이 지침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보다 더 향상된 보호조치와 관련된 현행의 또는 향후의 각국 및 유럽공동체 법령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b>제5조 일반규정</b> 1. 사업주는 작업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2. 제7조 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외부전문 자격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안전보건업

비공개를 채택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포)’는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를 금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클 경우에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

- 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3. 안전보건상 근로자의 의무사항도 사업주의 책임원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6조 사업주의 일반 의무**

1. 사업주의 책임 범주 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직업적 위험의 예방, 정보 및 훈련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조직과 수단의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항상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보다 향상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제1문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방원칙**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 (a) 위험을 제거할 것;
  - (b)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위험을 평가할 것;
  - (c) 위험요인은 발생원에서 관리(제거)할 것;
  - (d) 작업이나 일을 사람에게 맞출 것, 특히 단순작업이나 사전에 작업속도, 작업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작업장 설계, 기구·공구의 선정, 작업 및 공정방법의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할 것;
  - (e) 기술발달을 활용할 것;
  - (f) 위험한 것을 덜 위험하거나 무해한 것으로 대체할 것;
  - (g) 기술, 작업조직, 작업조건, 사회조직적 관계, 기타 작업환경과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계획(정책)을 수립할 것;
  - (h)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보호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
  - (i)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것.

#### **제10조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1. 사업주는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다음과 같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사업장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안전보건상 위험과 이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와 각 작업장이나 직무에 따른 특별한 안전보건상 위험과 이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
  - (b) 제8조제2항에 따라 취한 조치<sup>17)</sup>
2. 사업주는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해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의 (a) 내지 (b)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고 당해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나 근로자 대

표가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제9조 1항 (a) 및 (b)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조치사항;
- (b) 제9조 1항 (c) 및 (d)에 규정된 목록 및 보고서
- (c) 보호 및 예방조치와 감독기관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당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기본 입법지침의 제1조(목적)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예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위험 감소 조치 이전에 사업주는 위험을 제거를 검토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2장(사업주의 의무)’ 중 뒷 부분인 제10조에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Worker information)’을 위치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즉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다. (2) 작업환경개선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원칙(ILO-OSH 2001, ISO 45001, NIOSH)

위 EU 기본지침은 비단 유럽연합 회원국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보건경영체계에 관한 세계적 표준인 ILO 2001, ISO 45001과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권고에도 반영되어 작업환경개선 방법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원칙(Hierarchy of control)의 형태로 권고되고 있다(그림 1).<sup>18)</sup> 여기서 정보공개, 교육 등 행정적 대책은 사업주 주도의 사전 위험(또는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위험에 대한 본질적 대책인 공학적 대책 등 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17) 제8조(응급처치, 소방 및 대피,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1. 사업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업무특성에 적합한 응급처치, 소방 및 대피에 관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과 필요한 연락망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응급조치,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구조 및 소방에 대해서 필요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주는 그러한 조치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특히 응급조치, 소방 및 근로자대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자의 수,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장비는 사업장의 규모와 유해·위험특성에 따라 적절하도록 해야 한다.

18) ILO-OSH 2001 3.10.1/ ILO 45001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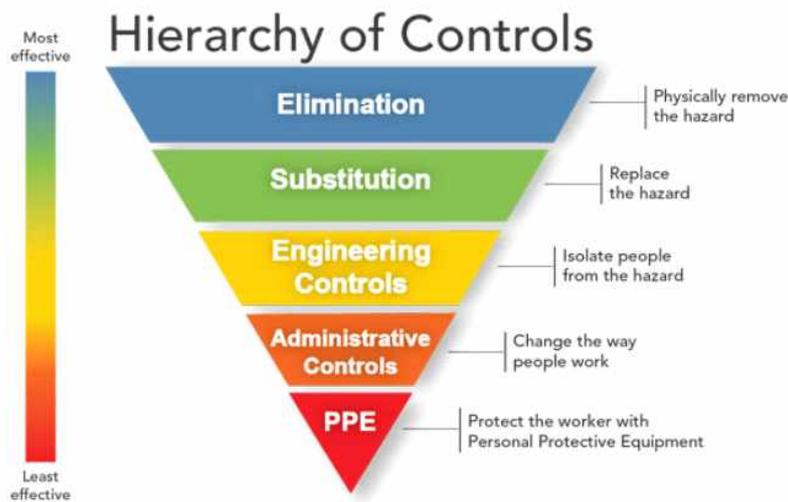


그림 28. 작업환경개선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원칙 (NIOSH 홈페이지)

## 2. 2. 사고조사의 일반원칙과 정보공개

### 가. (1) EU 세베소 입법지침의 정보공개

책임소재의 규명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책임자 처벌보다 더 중요한 조사의 실익인 원인규명과 교훈도출 상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독립성, 비규제성, 전문성,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고조사 제도를 만들었다.<sup>19)</sup> 이 원칙은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항공기 사고조사제도의 근거가 되었다. 항공사고뿐만 아니라 화학사고조사에도 적용되어 미국 화학사고조사위원회(CSB)는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사고조사기구이다. EU 입법지침 중에도 이 원칙, 특히 정보공개 모델이 될 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EU 회원국들은 Seveso 입법지침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 폭발·누출 등 중대사고를 EU에 보고해야 하며, 정보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eMARS에<sup>20)</sup> 등재된다. eMARS의 화학사고 정보에는 사고 개요는 물론 사고로

19) 항공기 사고와 사고조사에 관한 매뉴얼'(Manuel Aircraft Accident incident of and Investigation)(Doc9756)

부터 도출된 교훈도 실려있다. 사고에 관한 정보는 Seveso 입법지침을 집행하는 각 EU 회원국 당국이 조사한 결과들이다. eMARS에는 총 1,021개의 사고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p><b>EU 세베소 입법지침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sup>21)</sup></b></p> <p><b>제18조 - 주요 사고 후 회원국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b></p> <p>1. 주요 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회원국은 부속서 6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대사고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음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p> <p>(a) 회원국, 보고서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 및 주소</p> <p>(b) 운영자의 성명과 관련된 시설의 주소를 포함한 사고 날짜, 시간 및 장소</p> <p>(c) 관련된 위험물질과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사고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p> <p>(d) 취한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즉각적인 예방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분석 및 권장 사항의 결과</p> <p>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제21조제4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1항의 (e)에 따른 예비 정보만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기한 내에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추가 분석 및 권장 사항의 결과가 제공되면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p> <p>회원국에 의한 제1항 (e)항에 언급된 정보의 보고는 그러한 보고가 해당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절차의 완료를 허용하기 위해 지연될 수 있다.</p> <p>3.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고서 양식은 시행법의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행법은 제27조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p> <p>4. 회원국은 중대한 사고에 대한 관련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고 발생 시 개입해야 하는 다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언할 수 있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p><b>제21조 - 정보 시스템 및 교환</b></p> <p>1. 회원국과 위원회는 중대사고 예방 및 그 결과의 제한과 관련하여 얻은 경험에</p>
---

20) 중대사고보고시스템(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 MARS, 이후에 온라인으로 운영되면서 'eMAR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은 EU의 Seveso Directive 82/501/EEC에 의해 1982년 처음 설립되었고 여러 번에 걸친 Seveso 입법지침의 개정(현행 EU Directive 2012/18/EU)과 함께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eMARS의 목적은 중대사고 혹은 아차사고(near misses)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원활히 교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증진시키고 잠재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이 정보는 특히 이 지침에 제공된 조치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2. 2019년 9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후 4년마다 회원국은 이 지침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3. 이 지침이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 회원국은 위원회에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운영자의 이름 또는 상호 및 해당 시설의 전체 주소

(b) 시설의 활동 또는 활동

위원회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위원회 또는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4. 위원회는 특히 다음 목적을 위해 회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회원국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a) 18(1) 및 (2) 조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모든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배포한다.

(b) 주요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관계 당국에 배포한다.

(c) 예방조치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 제공;

(d) 중대사고의 발생, 예방 및 완화에 대한 조언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

5. 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이 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정보를 회원국과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관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달하기 위한 형식을 설정하기 위한 시행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시행법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제2항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 됨

6. 4항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8(1) 및 (2) 조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b) 사고 원인분석;

(c) 사고로부터 배운 교훈;

(d) 재발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

7. 위원회는 데이터의 기밀이 아닌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해야 한다.

#### **제22조 -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기밀 유지**

1. 회원국은 투명성을 위해 권한 있는 당국 이 입법지침 2003/4/EC에 따라 요청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이 지침에 따라 보유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침 2003/4/EC의 제4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4조를 포함하여 이 입법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의 공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거부

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3.14(2)의 (b) 및 (c)에 언급된 완전한 정보의 공개는 운영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조의 제2항을 침해하지 않고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입법지침 2003/4/EC의 4조에 명시된 이유로 안전 보고서 또는 위험물질 목록의 특정 부분을 공개한다. 관할 당국은 보고서 또는 목록의 특정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그리고 해당 기관의 승인에 따라 운영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수정된 보고서 또는 목록을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21) 입법지침 3개 조문 번역은 구글 번역기 활용하였으므로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직접 아래 링크를 열어 번역하실 수 있음. 링크 <https://lexparency.org/eu/32012L0018/>